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권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18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정지권 의원(1명)

찬 성 자 : 이은주, 이승미, 정진술, 강동길,
김인호, 정진철, 김동식, 이현찬,
김정태 의원(9명)

1. 제안이유

자동차를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시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자동차 변속 레버를 P에 위치시키지 않는 행위가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사이드브레이크 또한 작동시키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탈하여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굴러 감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여 인간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임.

2018년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서울대공원내 서울랜드 경사 주차장에서 변속레버를 주행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치 않은채 운전자가 이탈한 차량이 굴러 앞차량에서 짐을 내리던 가족을 충격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후 사고 가족의 요구사항중 하나인 파킹블럭 설치 요구에도 서울시와 서울랜드는 현수막 설치와 방송하는거 외에는 파킹블럭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울시 관할 공용주차장과 서울시 부지에 설치된 경사주차장에는 주차 블록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9조의2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의 경사주차면에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정된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하고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의 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② (생략)</p>	<p>제9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의 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u></p> <p><u>③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서울시 공영주차장 중 경사진 주차장의 고정된 고임목 설치비용 발생 가능
- ※ 서울시 공영주차장 중 경사진 주차장 모두 주차안전을 위한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 혹은 설치예정이기 때문에,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334,947천원

- 총 비용≒334,947천원(연평균 66,989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입	-	-	-	-	-	-	-
	소계 (a)	-	-	-	-	-	-
세출	○ 주차받침대 설치비용 (안 제9조의2제2항)	167,474	-	-	167,474	-	334,947
	소계 (b)	167,474	-	-	167,474	-	334,947
□ 총 비용(b-a)		167,474	-	-	167,474	-	334,947

다. 전제

- 주차받침대는 고임목 형식으로 면당 2개씩 설치하고, 4년차에 교체하는 것으로 가정

라. 방법

- 주차받침대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수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중 경사진 주차장 133개소를 적용(서울시 주차계획과 자료)
- 주차장 1개소당 서울시 공영주차장 평균 주차면수 78.7면 적용(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20년 3월 기준)
- 주차받침대 설치비용은 고임목 시장 거래단가 8,000원 적용(「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 사용단가, 웹조회 자료 기초)

마. 세부추계내역

- 주차받침대 설치비용=334,947천원
= (서울시 공영주차장 중 경사진 주차장수×평균 주차면수×주차받침대 단가 ×주차받침대 설치개수)×2회(1년차, 4년차)
= (133개소×78.7면×8,000원×2개)×2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 석 관 이수아

☎ 02-2180-7944

e-mail : sua8873@seoul.go.kr